

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 (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합니다.
하고 건네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이것을 빌려 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

제2장 예 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보다,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어린이 시
트 등의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해 예약의 신청을 행하는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
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원합니다.
지불해야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1.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없어야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
의 사정에 따라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합니다.)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다고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5. 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 및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과 다른
차종 렌터카 (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함)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에서 대체렌
타카를 빌려야합니다. 대체 렌터카 대여 요금이 예약 된 차종 클래스 대여
료를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렌터카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

는 제4조 제4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유에 의하면

제4조 제5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면책)

1.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

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합니다.)

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8조(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청소년

운전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따라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 (주 2)의 번호를 기입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

간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을 체결 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 (이하 "운

"전자"라고합니다.)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

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 여행

제138호 헤세이 7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말합니다.

(주 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 92 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 19 조

별기 양식 제 14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운

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고지

지식을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고,

또는 다른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체결의 거절)

1. 임차인은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 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의 제시가 없는 때. (2)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될 때. (4) 아동용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는 사람
라고 인정될 때.

(6)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폭력적 행위를 실시하거나 합리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또는 언론을 사용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합니다.

(1) 예약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 때. (2)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투기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투기는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6)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예약의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제10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약관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특별장비료 (3) 승차 요금 (4) 연료비 (5) 배차인수료 (6)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시에 당사가 오키나와 운수국장(이하 제14조제1항에서도 동일)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합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요금을 개정할 때에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을 비교해 낮은 쪽의 대여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48조 「정기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해야 합니다.

2.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는, 홋카이도 운수국 샤프로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관리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고 한다)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해,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자.
 -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것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시키는 것.
 - (3)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그 밖에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 하는 것.
 - (4) 렌터카의 자가용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 (5) 당사의 승낙을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견인 젊음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 (6) 법령 또는 공사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당사의 승낙을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고 차량 내에서 애완동물을 게이지에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 (9)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10) 그 외 제8조 제1항의 차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불법주차를 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고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수반하는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함과 동시에 렌터카의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른다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 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를 경찰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
4. 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전항의 지시를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른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행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 사실 관계를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의도한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 사람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한 경우, 수인에게 다음으로 튀기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자리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관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 따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7.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납부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의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이 불법주차에 걸리는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해당 임차인이 제2항 항에 근거한 위반을 처리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차인 부터,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 있어서 「주차 위반금」이라고 합니다.)을 신청하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9.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 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때에는 당사는 제6항에 규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착수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후각 당해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회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 한 주차 관련 비용 덧붙여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 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장 반환

제19조(반환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은 당사에 부여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제20조(반환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용에 의해 마모한 개소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제21조(임차 기간 변경시의 대여 요금)

1. 임차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2조(반환 장소 등)

1. 임차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배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임차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위약금으로서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액 및 회송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의 합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불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이되는 등의 이유로 불 반환이됩니다.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탐색·조사 또는 형사고소를 행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렌트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집, 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의 청취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24조(고장 발견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5조(사고 발생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큰 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의거 렌터카의 수리를 행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

의 지정하는 공장에서 행하는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있는 보험 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늦게 정제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할 것입니다.

제26조(도난 발생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밖의 피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한다. 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통보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제27조(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중에 있어서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가 사용으로 사라지면 대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한이 아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하자에 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교환 렌트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한다.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 당사는 영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차용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6. 임차인은 당사에 대하여 본조 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종료되고 당사에 고의 및 중과실이 없었을 경우 이 경우, 본 조 3 항 내지 5 항에 규정 된 청구만 가능하며,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배상 및 영업보상)

1.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다. 때로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 오염, 냄새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곳로에 의해 배상하거나 영업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보험 및 보상)

1. 임차인이 제28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배상보험계약

그리고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보상 1명당 무제한 (2) 대물보상 1

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까지

2.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응.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
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당사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의 가입료 상액은 대여요금에 포함
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제30조(대여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일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해,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한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 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
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동의해약)

1. 임차인은, 사용중이여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사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뒤 대여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 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 반환까지의 기간
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개인정보의 이용목적)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 80 조 제 1 항에 근거하는 렌터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계약 체결시에 대여
도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되고 있는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서, 광고 광고물
의 송부, 메일의 송신등의 방법에 의해 안내하기 위해.

(3)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확인 및 심사를 행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
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한다
하기 위하여.

(6) 제18조제6항에 있어서의 법적 조치 및 제23조제1 2호에 있어서의 법적 조치의 손에 관하여 이용한다
하기 위하여.

2. 제1항 각호에 정하고 있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행합니다.

제33조(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1.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방치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제10장 잡칙

제34조(상쇄)

1.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임차인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를 언제
하지만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5조(소비세)

1. 임차인은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한다.
합니다.

제36조(자연손해금)

1. 임차인 및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율 14%의 비율로
따라서 자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

(세칙)

1.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해야 합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브로셔,
요금표 등에 이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8조(합의 관할 법원)

1. 이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소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
가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을 가지고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분

약관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쿠쿨 렌터카 나하 공항점

주식회사 GRC 오토리스

취소 정책

○ 취소 수수료에 대해

손님의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되는 경우, 하기 캔슬료를 부과합니다.또, 출발 시간을 연락하지 않고 1 시간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도, 예약의 취소로 하겠습니다

예약 취소 수수료는 취소한 날이 다음 기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승차일 7일 이전	승차일 6일~3일 전	승차일 2일 전	승차일 당일 이후	
무료	20%	30%	50%	

○ 취소 방법에 대해

이하의 방법으로부터 선택해 주세요

(1) 전화로 점포에 연락 (2) 예약 사

이트등으로부터 캔슬의 수속

○ 취소 요금 지불에 대해

사전청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매장에서의 정산카 청구를 송부하므로, 입금으로의 정산이 됩니다

사전 청산이 끝난 경우 받

은 대금보다 상쇄해 정산·환불이 됩니다

※주의점※

※ 크레딧으로 사전 청산을 하고 있는 경우는 크레딧 회사님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사용된 신용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금 확인

인정 및 청구·환불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불입 등에 관련된 수수료는 모두 고객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쿠쿨 렌트카 나하 공항점 주식회사

GRC 오토리스